

2017년도 2/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

2017. 8. 31

감사위원회

1.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
“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고대상

- 기 간 : 2017. 4. 1. ~ 6. 30.(2017년 2분기)
- 대 상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원순씨 핫라인) 및 오프라인(우편, 방문 등)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

□ 접수결과

- 2017년 2분기 총 159건 접수

[표 1] 2017년 2분기 청구별 월별 접수현황 (단위: 건)

접 수 청 구	합 계	4월	5월	6월
공 익 신 고	42	9	18	15
공직자비리신고	115	32	35	48
부 정 청 탁	1	1	-	-
퇴직공무원특혜	1	1	-	-
합 계	159	43	53	63

※ 전 분기(2017년 1분기) 접수 건수 118건에 비해 34.7% 증가
전년 동 분기(2016년 2분기) 접수 건 147건에 비해 8.2% 증가

2.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

□ 제보 경로 분석

[표 2]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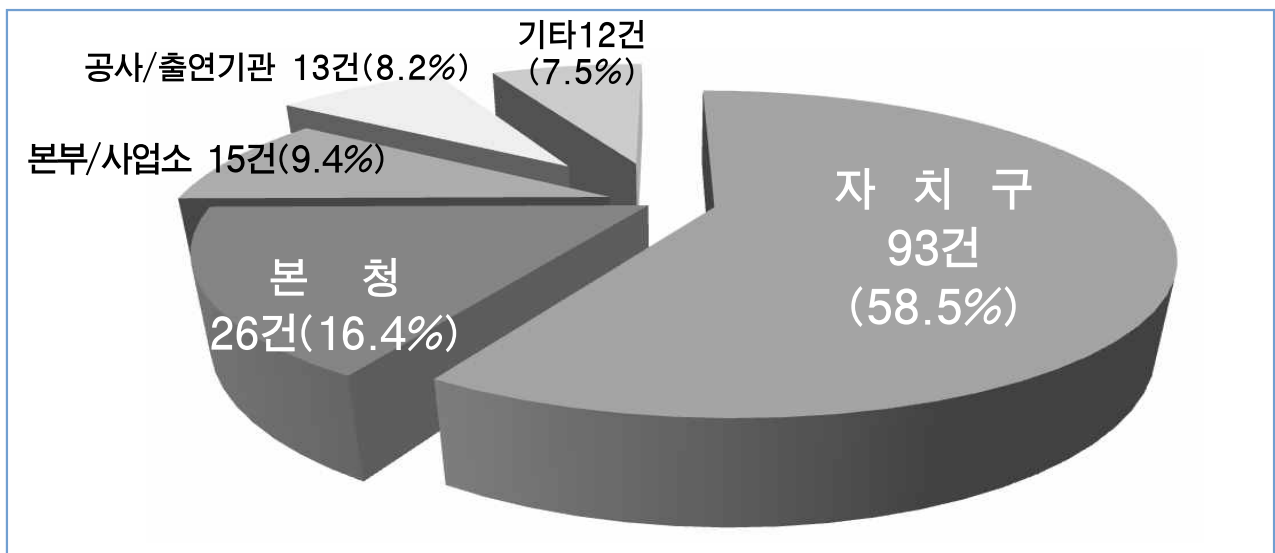
(단위: 건)

경로	합 계	온 라 인 홈페이지/모바일	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	기 타 응답소/우편/방문/팩스
접수건수	159	138	14	7

*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

□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

-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93건(58.5%)으로 가장 많았음
 - 주택법/건축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공익신고 24건
 - 복무, 업무부적정 등의 공직자비리신고 68건, 퇴직공무원특혜 관련 1건
- 본청 소관사무 제보 26건(16.4%), 본부/사업소 소관 15건(9.4%)
 -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6건, 공직자비리신고 20건 접수
 - 본부/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4건, 공직자비리신고 10건, 부정청탁 1건
- 그 외에 공사/출연기관 제보가 13건(8.2%), 기타 12건(7.5%)
 - 공사/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5건, 공직자비리신고 8건
 - 기타 12건(%)은 금융감독원, 국회 등의 타 기관 소관사무



3. 제보자 유형 분석

□ 내부제보자 유형 분석

○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내부신고자에 해당하는 제보는 32건(20.1%)로 추정

[표 3] 내부신고자 유형분석 결과(추정) (단위 건)

유형	총계	(전/현)근무자 법 제2조 제7호 가목	계약 업무 수행자 법 제2조 제7호 나목	관리·감독을 받는자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건 수	32	14	10	8

※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내부 공익신고자’ 해당 규정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법 제2호 제7호 가목)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3.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5. 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법 제2호 제7호 나목))
6.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4. 제보내용 유형 분석

□ 제보내용의 분류

○ 접수된 159건 재분류 결과,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114건

[표 4]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

(단위 건)

총계	공익제보 해당 114건			일반민원/기타
	부패신고	공익신고	부정청탁/퇴직 공무원특혜	
159 (100%)	80 (50.3%)	32 (20.1%)	2 (1.3%)	45 (28.3%)

※조례상 ‘공익제보’ 해당 신고 범위

구 분	개 요	신고 대상 행위
부패 신고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부패행위”신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 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공익침해행위”신고	식품위생법,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279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 위반 등

○ 부패신고 80건 세부 내용

[표 5]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 분류

(단위 건)

구분	소관기관	건수	조치 상황	내 용
금수 품수	본 청	2	조사중1, 해당없음1	공무원 및 투출기관 직원 대상
	공사 / 출 연	1	증거불충분1	
	소 계	3		
불공정 등 계약	본 청	3	증거불충분1, 해당없음1, 민원취하1	입찰 계약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등
	자 치 구	5	조사중2, 중복종결3	
	본부/사업소	2	해당없음2	
	소 계	10		
복관 무련	자 치 구	6	개선1, 민원취하5	허위출장/근태/ 성희롱 등 공무원 복무관련
	사 업 소	1	해당없음1	
	기 타	1	권한없음1	
	소 계	8		
인관 사련	자 치 구	1	권한없음1	기관의 부적정 인사 등
	본부/사업소	2	조치1, 중복종결1	
	공사 / 출 연	1	조사중1	
	소 계	4		
업무 적 무정	본 청	4	조치1, 조사중1, 해당없음1, 민원취하1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미숙/부주의 또는 고의로 발생한 사건(업무소홀 혹은 업무부당행위)
	자 치 구	33	조치2, 개선1, 조사중1, 해당없음9, 중복 종결12, 민원취하8	
	본부/사업소	1	개선1	
	공사 / 출 연	9	개선2, 조사중2, 해당없음1, 중복종결3, 민원취하1	
	소 계	47		
품위 위반	본 청	3	개선1, 해당없음2	영리행위 등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
	자 치 구	3	개선1, 조사중1, 해당없음1	
	본부/사업소	1	해당없음1	
	기 타	1	권한없음1	
	소 계	8		
총 계		80		

*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

○ 공익신고 32건 세부 내용

[표 6]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내용 분류

(단위 건)

구 분	건수	소관기관	조치 상황	내 용
개인정보보호법	2	자 치 구	개선1, 해당없음1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노출
건 축 법	11	자 치 구	개선1, 조사중2, 해당없음7, 중복종결1	미신고 허가 불법 건축물
도 로 법	1	자 치 구	해당없음1	도로의 불법점유
동 물 보 호 법	1	자 치 구	조사중1	티앤알사업의 불법진행
사회복지사업법	1	자 치 구	조사중1	복지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식 품 위 생 법	1	사 업 소	조사중1	음식판매점 위생조건 미비
영 유아 보 육 법	1	자 치 구	해당없음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관
의 료 법	1	자 치 구	개선1	무자격 의료행위
장 애 인 복 지 법	2	자 치 구	조사중2	장애인복지시설 내 부당행위
주 택 법	9	자 치 구	개선1, 조사중1, 해당없음5, 권한없음1, 민원취하1	주택부실시공,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보비공개
청 소 년 보 호 법	1	자 치 구	조치1	청소년을 통한 주류판매
청소년활동진흥법	1	본 청	조사중1	청소년수련원의 내부 부당행위
총 계	32			

*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

○ 부정청탁 1건 - 민원취하, 퇴직공무원 특혜 1건 - 증거불충분

5. 처리 결과

□ 공익제보 처리 내역 (’17.8.16. 기준)

[표 7] 공익제보 처리 현황

(단위 건)

총계	처분 및 개선 21		종결 95				조사중	취하
	처분(조치)	개선 등	해당 없음	증거 불충분	중복 종결	권한 없음		
159	5	16	61	5	20	9	24	19

※ 개선 등 내역 : 구두경고, 주의촉구,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

※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5항)

□ 조치사항 5건 처리내역

[표 8] 공익제보 조치(요구) 결과

(단위 건)

번호	신고 내용	소관 기관	조치 내역
1	민원인 비하 발언	본청 *조사담당관 조사	훈계1
2	자격미달자에 대한 승진심사 등	본부 *조사담당관 조사	주의(요구)1
3	견인기사에 대한 견인보관소장 등의 갑질	자치구	중징계1, 경고1, 주의1, 시정 등
4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자치구	과태료 처분(480,000원)
5	타인에게 민원인 신분노출 및 응대 부실	자치구	주의1, 훈계1